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의장	제865호	2011. 12. 30.(금)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1-83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1-75호선 외 2개 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1-84호 2012년도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 3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1480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폐차)처리 공고 ---- 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1486호 2012년도 지방공무원명예(조기)퇴직수당 지급 시행계획 공고 ----- 1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1503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2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1507호 경서3 구역 도시개발사업환지 계획 공람공고 ----- 30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032-560-4140]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1 - 83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1-75호선 외 2개 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명:중로1류75호선 외 2개 노선, 사업명:석남동 중1-75호선 도로개설공사 외 2개 노선】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73) 및 건설과(560-452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1. 12. 30.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석남동 중1-75호선 도로개설공사(중1-75호선)】

1. 변경사유 : 보상협의 지연 및 공사 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
2.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529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도시계획도로(중로1류75호선)
 - 【명칭】 석남동 중1-75호선 도로개설공사
4.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L = 290.0m, B = 20.0m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2009. 2월 ~ 2011. 12. 31(기정)
2009. 2월 ~ 2012. 12. 31(변경)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변경없음) : 게재 생략

【원창동 동일폐차장 인근 도로개설공사(중1-53호선)】

1. 변경사유 : 보상협의 지연 및 공사 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
2.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236-33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도시계획도로(중로1류53호선)
 - 【명칭】 원창동 동일폐차장 부근 도로개설공사
4.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L = 525m, B = 20m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2007. 1월 ~ 2011. 12. 31(기정)
2007. 1월 ~ 2012. 12. 31(변경)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변경없음) : 게재 생략

【왕길동 소3-502호선 도로개설공사(소3-502호선)】

1. 변경사유 : 보상협의 지연 및 공사 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
2.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194-9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도시계획도로(소로3류502호선)
 - 【명칭】 왕길동 소3-502호선 도로개설공사 도로개설공사
4.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L = 219.9m, B = 6.0m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2009. 9월 ~ 2011. 12. 31(기정)
2009. 9월 ~ 2012. 12. 31(변경)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변경없음) : 게재 생략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1 - 84호

2012년도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제3항·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1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I. 2012년도 건물 등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함(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금액)

나. 건물별 시가표준액

- ①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체계(산출체계도, 산출요령)
 - ② 적용지수(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 ③ 경과년수별 잔가율
 - ④ 가감산특례(가산대상 및 가산율, 감산대상 및 감산율, 특정 건물에 대한 가산율)
 - ⑤ 증·개축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 ⑥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 ⑦ 구분지상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 <부록> 건물시가표준액 일람표

2. 세부결정사항

서구 세무과에 비치하고 있는 건물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Ⅱ. 2012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차 량(34,231건)

①정의 ②용어해설 ③시가표준액 ④과표적용요령 ⑤산출예시

나. 기계장비(10,799건)

①정의 ②종류 ③기계장비 연도별 잔가율표 ④시가표준액
⑤적용요령 ⑥산출예시

다. 선박(7종, 135건)

①용어정의 ②용어해설 ③내용년수 및 감가율
④선박 및 선박기관 시가표준액표 ⑤시가표준액 적용요령

라. 항공기(4종, 144건)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내용년수 및 잔가율 ④시가표준액표 ⑤ 적용방법

마. 시설물(7종, 2,036건)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시가표준액 ⑤적용방법

바. 부수시설물(9종, 369건)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시가표준액 ⑤적용방법

사. 입목(2종, 21건)

①용어정의 ②용어해설 ③종류 ④시가조사방법 ⑤적용요령 ⑥시가표준액

아. 어업권(233건)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적용요령 ④산출예시 ⑤양식품종별표준시설내역

자. 광업권(7건)

①용어정의 ②대상 ③용어해설 ④적용요령

차. 회원권(골프·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 (2,809건)

①용어정리 ②종류 ③시가표준액표

하. 지하자원(198건)

①용어정리 ②지하자원의 대상 ③용어해석 ④시가표준액

2. 세부결정사항

서구 세무과에 비치하고 있는 기타물건별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 - 1480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폐차)처리 공고

1. 무단방치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동법시행령제6조에 의거 무단방치자동차강제(폐차)처리 공고 하오니 해당 차량소유자는 본 공고 기간 내에 자진처리(이전 또는 자진폐차)하여 주시고 (차량 내 모든 물품, 비품 도 강제처리 됨)또한 이해관계인은 권리행사 기간내에 권리행사 및 대체 압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일,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하지 않는 차량은 강제(폐차)처리됨은 물론 차량소유자 또는 방치행위자는 자동차관리법제86조,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2조(20-150만원 범칙금)에 의거 통고처분 할것이며, 또한 동법제81조 제1호(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의거 관할검찰청에 송치 하게됩니다.
3. 또한 이해관계인이 권리행사 기간내에 권리행사를 하지않을 경우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 2011년 12월 27일 ~ 2012년 01월 10일

나. 대상차량 : 따로붙임(25가8348외37건)

다. 강제(폐차)처리시기 : 2012년 01월 10일 이후

라. 강제(폐차)처리장소 : 관내 폐차장

마.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기간 : 공고일로 부터 만료일까지.

바. 문 의 처 : 서구청 교통행정과 (☎ 032-560-4962)

붙 임 : 무단방치자동차강제(폐차)처리내역 .끝.

2011년 12월 26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무단방치자동차 강제(폐차)처리 내역

명령번호	차량번호	차종	소유주	소유주 주소	압류 및 저당권자 (이해관계인)
455	25가8348	엑센트	NYANDU U JAMBAL DORJ	시흥시 정왕동 1289 시화공단	시흥시청[세정, 주차단속], 시흥경찰서[교통], 시흥차량관리사업소[차량관리], 인천서구청[교통행정]
584	전북70가 1533	싼타모	안재성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12번지 10호 송천동진흥더블파크APT	덕진구청[징수, 사회, 세무], 효자출장소[사회산업, 경행], 완산구청[경행, 지경, 도교], 전주지방법원 98카단17751[현대자동차서비스(주)], 전주시차량등록사업소[차량], 국민건강보험공단전주북부지사[징급], 전주북부경찰서[교통], 군포시청[교통지도, 교통과], 서초구청[주차관리], 강남구청[교통지도], 덕진경찰서[경비교통], 서울시청[교통지도, 도로행정], 파주시청[도시미관], 송파경찰서[교통]
588	26너7155	엑센트	바얀골인 터내셔널 (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18-6 대영빌딩	인천동구청[교통], 동대문구청[세무2과, 환경위생, 교통행정], 일산동구청[사회교통], 동대문경찰서[교통], 서울중구청[교통지도]
589	경기87마 7309	수산승용 차운반차	정동찬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476번지 탄현마을 801동 1304호	김포시청[교통, 환경보전], 김포시차량등록사업소[차량등록], 고양시차량등록사업소[차량], 고양시청[환경보호], 인산동구청[건설교통, 도시미관], 광진구청[주차관리], 일산서구청[세무], 강남구청[주차관리], 서천군청[재무]
592	경기38다 5554	누비라	신준철	부천시 오정구 작동5번지 로얄A	국민건강보험공단부천북부지사[자징],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03카단10433[삼성캐피탈(주)], 부천시청[교지, 시민, 차량관리], 강서구청[주차관리]
595	경기3으 7860	엑센트	SHAHID IQBAL		화성시청[세정], 화성시차량등록사업소[차량등록], 팔달구청[경제교통], 화성시동부출장소[세무]

무단방치자동차 강제(폐차)처리 내역

명령번호	차량번호	차종	소유주	소유주 주소	압류 및 저당권자 (이해관계인)
601	인천31도 1368	그랜저	(주)티지 글로벌(주 식회사신커뮤 니케이션)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36-	마포구청[교통지도], 종로구청[교통지도], 남동구청[교통과, 환경위생, 세무], 인천중구청[교행], 근로복지공단경인지역본부[징수], 인천남구청[교통], 연수구청[교통행정], 남인천세무서[세원관리], 인천남구시설관리공단[공단]
607	서울85구 4813	포터	(주)승암 개발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9- 23 경동빌딩	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남부지사[징수부], 양천구청[교통행정, 세무 2과, 맑은환경],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안성시법원2010카단331[(주)양투카], 국민연금관리공단남동연수지사[고객지원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서부지사[징수부]
613	12나2309	카니발	위진숙	인천 계양구 박촌동 72- 2 아주아파트 2동 204호	계양구청[교통행정, 환경위생, 세무], 계양경찰서[경비교통], 인천중구청[교통행정]
619	인천34노 5231	레간자	윤석한	인천 서구 검암동 493-	국민건강보험공단계양지사[징징], 단원구청[산업교통], 계양구청[교통행정, 환경위생, 세무], 인천서구청[교통행정, 세무], 인천서부경찰서[경비교통]
629	인천7고 2864	포터	강현석	인천 남구 도화동 603-	덕양구청[교행], 인천중구청[교행], 계양구청[교행], 성동구청[교지], 인천남구청[교통, 세무1과, 환경위생, 교통민원, 환경보전], 부평구청[교통행정]
631	05머6301	쏘나타투	이명식	인천 서구 신현동 112-	남동구청[교통], 인천서구청[교통행정, 교통민원, 호 1- 1경보전, 세무], 서울중구청[교통지도], 검단출장소[검출],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주차환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서부지사[징수]
634	번호미상	오토바이	미상	미상	

무단방치자동차 강제(폐차)처리 내역

명령 번호	차량번호	차종	소유주	소유주 주소	압류 및 저당권자 (이해관계인)
639	인천81나 6245	포터	최경숙	인천 남구 용현동 568-	인천시청[주차관리], 인천남구청 [교통, 환경위생, 세무, 환경녹지, 환경보전], 부평구청[교통행정], 인천서구청[교통행정], 계양구청 [교통행정], 종로구청[교통지도], 대구시청[주차교통], 서울중구청 [교통지도]
640	70서1858	싼타모	김수진	인천 연수구 연수동 546-	연수구청[세무, 교통행정], 국민건 강보험공단인천남부지사[징수 부], 부평구청[교통행정], 관진구 청[주차관리]
641	인천82다 5909	봉고	김희환	인천 서구 가좌동 360-	부평구청[환위, 시세, 교행, 세무, 환경보전], 국민건강보험공단부평 지사[징수], 인천시청[주차관리], 구루구청[교통지도], 부평경찰서 [경비교통], 영등포구청[주차문 화], 인천서구청[세무]
642	번호미상	오토바이	미상	미상	
645	경기89다 6082	그레이스	이용승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 동 408번지 1호 주공아파트 204동	부천시청[민원, 시민봉사, 교통지 도, 도시미관, 차량관리], 소사구청 [환위, 경제교통, 세무, 환경녹지], 부평구청[교행], 부천남부경찰서 [교통], 원미구청[건설과, 경제교 통], 부천시차량등록사업소[차량 관리], 시흥시청[교통지도]
651	인천80더 5607	카니발	유상열	인천 남구 용현동 488-	인천중부경찰서[교통], 인천남구 청[교통, 환경녹지, 환경위생, 세무 1과, 환경보전, 교통민원]암동구청 [교통], 인천중구청[교행]

무단방치자동차 강제(폐차)처리 내역

명령번호	차량번호	차종	소유주	소유주 주소	압류 및 저당권자 (이해관계인)
652	서울30더 9635	카니발	이성기	서울 양천구 신정동 1158-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2001카단 22963[양승옥], 구로경찰서[교 통], 서대문구청[교지], 강남구청 [교지], 구로구청[교통행정, 민원 여권, 환경], 서초구청[주차관리], 노원구청[교통지도], 양천구청[세 무2과], 국민건강보험공단평택지 사[징수부]양천경찰서[교통], 의 정부시청[교통지도]
654	인천81나 2492	와이드봉 고	한 암	인천 계양구 작전동 103-	연수구청[환위], 부평경찰서[경비 교통], 근로복지공단인천북부지사 [징수], 부평구청[세무, 교통행정, 환경위생], 인천남구청[교통], 계 양구청[교통행정, 환경위생, 세무]
655	경기5보 1651	그레이스	최시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185-	종로구청[교지], 장안구청[징수, 세무, 환경위생, 경제교통], 수원시 청[환경정책], 수원시차량등록사 업소[차등]
656	80마5659	다마스밴	임영민	서울 은평구 녹번동 53-	은평구청[교통지도, 세무2과, 맑은 도시과, 차량등록], 종로구청[교통 지도], 서울서부지방법원2005카단 3848[(주)현대캐피탈], 구로구청[교 통지도, 주차관리], 서울중구청[교 통지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평지 사[자징, 고객지원부], 서울서부경 찰서[교통], 인천중구청[교행]
657	인천7로 6942	포터	지정숙	인천 부평구 십정동 587- 12	부평구청[환보, 세무, 교행, 지교, 환위], 남동구청[교통, 환위, 세 무], 마포구청[교지], 국민건강보 험공단[지징], 관진구청[교지], 서 울시청[교단], 성북구청[교관], 강 동구청[교통]
658	80거2541	포터	최병권	서울 송파구 가락동 40-	송파구청[민원봉사, 맑은환경, 교 행], 서초구청[주차관리]

무단방치자동차 강제(폐차)처리 내역

명령번호	차량번호	차종	소유주	소유주 주소	압류 및 저당권자 (이해관계인)
659	인천7도 6868	포터	마숙현	인천 남구 주안동 996-	인천시청[교기], 인천서구청[교행], 인천동구청[건교, 교녹, 환위, 세무, 민원봉사, 환경보전], 인천지방법원2001카단6479[박승균], 인천남구청[교통, 환경녹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중부지사[지관, 자징]
660	인천80거 4018	그레이스	최득만	인천 서구 가좌동 81- 39 지하호(인천 동구 송현동 56-112 2층)	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서부지사[징급], 서울지방법원2003카단191290[서울보증보험(주)], 인천서구청[교통민원, 환경보전, 세무, 교통행정, 환경위생], 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중부지사[징수]
661	86무4616	마이티III	김병국	경기 김포시 감정동 205- 1	김포시청[환경위생, 환경보전, 세정], 국민연금관리공단서인천지사[고객팀], 김포시차량등록사업소[차량관리], 원미구청[세무1과], 부천시청[차량관리]
662	경기93두 5041	와이드봉고	이득수	경기 김포시 감정동 517- 1 쌍용아파트 107동 104호	강남구청[교지], 동작구청[교지], 김포시청[환경, 세정, 환경보전], 김포시차량관리사업소[차량등록], 김포경찰서[교통], 남동구청[교통], 강북구청[교통지도], 영등포구청[교지, 세무], 근로복지공단서울남부지사[납부지원2부]
663	24소4734	카니발II	주홍석	인천 부평구 부평동 341-122 구구오피스텔 407호	부평구청[주차관리, 세무, 환경보전, 교통행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부평지사[징수부]
664	인천80가 2446	트레이드	한상진	인천 서구 가좌동 180-	인천서구청[[환경위생, 세무, 교통민원, 환경보전], 국민연금관리공단인천서부지사[가일], 근로복지공단인천북부지사[징수], 인천시청[교통관리], 인천남구청[교통, 세무1과], 인천지방법원2006카단18624[장경천]

무단방치자동차 강제(폐차)처리 내역

명령번호	차량번호	차종	소유주	소유주 주소	압류 및 저당권자 (이해관계인)
665	80노5615	타운너	김대웅	서울 강서구 화곡동 220-	강서구청[주차, 교통행정, 환경위생, 세무, 환경과], 오정구청[경제교통], 영등포구청[주차문화] 국민건강보험공단강서지사[징수]
666	70보1699	카니발	송민호	인천 계양구 계산동 57- 12 제일그린타운 1동 301호	광명경찰서[교통], 계양구청[교통, 세무, 환경위생], 부평구청[교통], 구로구청[교통지도, 주차관리], 금천구청[교통지도], 관악구청[교통지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계양지사[고객지원]
667	27누4575	갤로퍼2	이순자(사 망말소자)외 박춘화	인천 동구 화수동 321 화도 진그린빌주공아파트 102동 1002호	인천중부경찰서[경비교통], 인천동구청[환경위생, 교통, 세무, 환경보전], 인천남구청[교통], 남동구청[주차관리, 교통행정, 환경보전], 강남구청[교통지도], 파주시청[도시미관], 일산동구청[도시미관], 분당구청[경제교통], 강서구청[주차관리], 양주시청[교통]
668	75서3953	카렌스	MAVLYA NOV JASURBE K	경기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544- 14	부천시청[차량관리, 도시미관], 강남구청[교통지도], 오정구청[환경위생], 부천중부경찰서[경비교통], 원미구청[경제교통], 국민건강보험공단부천북부지사[부과징수], 용산구청[교통지도], 강서구청[주차관리], 양천구청[교통지도], 서울중구청[교통, 교지], 강동구청[교통관리], 서초구청[주차관리], 영등포구청[주차문화], 소사구청[경제교통], 속초시청[교통]

무단방치자동차 강제(폐차)처리 내역

명령 번호	차량번호	차종	소유주	소유주 주소	압류 및 저당권자 (이해관계인)
669	서울45누 2510	스펙트라 왕	권태성	서울 구로구 공동 213-21 우신빌라 16동 302호	강남구청[교지], 광진구청[교지] 서울동부경찰서[교통], 동대문구 청[교관], 강서구청[세이, 교행, 환경위생], 광명시청[교행, 지도 민원], 관악구청[교지], 강서경찰 서[교통], 화성시청[교행], 상당 구청[경제사회], 시흥시청[교통 지도], 국민건강보험공단강서지사 [징수부], 대구남부경찰서[경비교 통], 남동구청[교통], 양평군수[건 설교통, 지역경제],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도로영업], 구로구 청[세무], 안성경찰서[경비교통], 구로경찰서[교통], 시흥시차량등 록사업소[차량관리], 서울중구청 [교통지도], 소사경찰서[교통]
670	인천35더 3939	마티즈	박윤경	인천 남구 송의동 109-281	부평구청[교행], 인천서구청[교 행, 교민, 세무, 환경위생], 인천남 구청[교통, 세무1과, 교통민원], 서대문구청[교지], 마포구청[교 통지도, 인천중구청[교행], 인천 서부경찰서[경비교통], 서울시청 [도로행정담당관]
671	87가6898	프런티어 1.4톤	김기훈	인천 서구 심곡동 298-12 태남렉스빌 6동 B02호	이천세무서장[징세], 안산시청[환 경위생], 인천서구청[세무, 환경보 전, 교통민원]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 - 1486호

2012년도 지방공무원명예(조기)퇴직수당지급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및 지방공무원 명예(조기)퇴직수당 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지방공무원 명예(조기)퇴직수당지급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계획인원

- 명예퇴직 : ○명
- 조기퇴직 : ○명

2. 명예(조기)퇴직 신청

가. 신청대상

- 명예퇴직 : 공무원연금법상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 공무원**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제외)
- 조기퇴직 : 실제 공무원으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 공무원**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제외)

나. 신청기간 : 홀수 달(1, 3, 5, 7, 11월) 1일~15일까지

(※ 부득이한 경우 수시신청 가능)

※ 수시 명예퇴직 사유

- 명예퇴직수당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가 재임용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 직제와 정원의 개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다. 신청절차

- 명예·조기퇴직 신청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 별첨 「명예·조기퇴직 수당지급 신청서」, 「명예·조기퇴직원」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3. 대상자 선정 및 추천

가. 소속기관(부서)에서는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매월 신청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추천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상위직, 장기근속자를 우선 추천해야 함.

나. 대상자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조기퇴직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①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 ②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③ 감사원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
- ④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 ⑤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 ⑥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나 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 명예전역수당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
- ⑦ 수당지급 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대상 공무원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
- ⑧ 그 외 ①내지 ⑦에 준하는 사유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4. 대상자 심사결정 및 통지

추천된 명예·조기퇴직 대상자는 당해 월 21일 이후 인천광역시서구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조기퇴직 대상자를 월 단위로 최종결정하며, 그 결과를 즉시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

5. 명예(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의 취소

명예·조기퇴직 신청기간 이후 명예(조기)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명예 퇴직수당지급 결정을 취소함.(3의 나)

6. 수당지급

명예·조기퇴직 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급여 결정이후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예산 부족 시에는 예산 확보 후)

7.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 ①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②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 ③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 받은 경우

8. 수당 산정방법

○ 명예퇴직

정년잔여 기간별 대상자	산 정 기 준
1.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월봉금액의 반액 × 정년 잔여월수
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월봉금액의 반액 × $[60 + \frac{\text{정년 잔여월수} - 60}{2}]$
3. 10년을 초과하는 자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 (10년을 초과하는 정년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미지급)

※ 월봉금액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라 규정

[현행 규정상 월봉금액은 봉급표상 봉급액 및 연봉월액의 81%]

< 월 봉급액 산출예시 >

- ☞ 호봉제 공무원의 명예퇴직 수당 : **봉급표상 봉급액의 68%(변경:2011.1.10)**
 例示) 봉급표상 봉급액 × 68% × 1/2 × 정년 잔여월수 (위 산출방식에 의함)
- ☞ 연봉제 공무원 : 연봉월액 81%×66% ×1/2 = **[(연봉액-성과연봉) / 12×81%×66% ×1/2]**
 例示) 연봉월액 × 81% × 66% × 1/2 × 정년 잔여월수 (위 산출방식에 의함)

○ 조기퇴직 : 퇴직당시 월 봉급액의 6개월분 지급

※ 단, 월 봉급액 산정기준에 있어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시 개정된 규정에 의한 산정기준을 적용 함.

9. 기타사항

- 가. 소속기관장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명예·조기퇴직의 대상자로 추천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등과 같이 명예퇴직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자는 이를 엄격히 심사하여 부적격한 대상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나. 기타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참조하시거나 총무과 인사팀(560-4102)으로 문의 바랍니다.

10. 제출서식

- ① (수시)자필 명예(조기) 퇴직원 1부
- ② (수시)명예(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서 1부
- ③ 자필 사직원 1부
- ④ 퇴직자 보안서약서 1부
- ⑤ 퇴직공무원 보안교육 및 서약집행 1부
- ⑥ 계좌입금통장 사본 1부
- ⑦ 주민등록등본 1부.

명 예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위 :
3. 직(계)급 :
4.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기·수시)명예퇴직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예퇴직 사유(구체적) :

※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 명시

○ 명예퇴직 신청일 :

○ 명예퇴직 희망일 :

※ 명예퇴직 희망일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른 수시명예퇴직 신청자만 기재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앞 쪽)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서										
신청인 기재란	① 소 속			<input type="checkbox"/> 일반직	④ 직(계)급 (호봉)					
	② 前 소 속 (특수경력직 공무원만 기재)		③ 공무원 구분	<input type="checkbox"/> 특정직() <input type="checkbox"/> 기능직						
	⑤ 성명	한 글 한 자		⑥ 주민등록번호						
	⑧ 전화번호(자택)			⑦ 주 소	□□□-□□□					
소속 기관 기재란	⑪ 비위·형벌 사항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비위조사중 <input type="checkbox"/> 수사진행중 <input type="checkbox"/> 형사재판 계류중 <input type="checkbox"/> 징계의결 요구중 <input type="checkbox"/>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input type="checkbox"/>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⑫ 정년구분	<input type="checkbox"/> 연령정년	<input type="checkbox"/> 계급정년	⑬ 정 년					(세, 년)	
	⑭ 경력직 퇴직후 특수경력직 퇴직시까지의 경과기간		<input type="checkbox"/> 별정직 <input type="checkbox"/> 계약직 <input type="checkbox"/> 고용직	년 월	확인				인사담당관 (인)	
	⑮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	년 월 (년 월)	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역							
소속 기관 기재란	⑰ 비위·형벌 사항 확인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비위조사중 <input type="checkbox"/> 수사진행중 <input type="checkbox"/> 형사재판 계류중 <input type="checkbox"/> 징계의결 요구중 <input type="checkbox"/>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input type="checkbox"/>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확인	인 사 담당관	(인)	연 금 담당관	(인)	감 사 담당관	(인)		(인)	
<p>「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p>										
<p>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부서의 장 직인</p> <p style="text-align: center;">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p>										

-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연금·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뒤 쪽)

● 신청서 작성방법 ●

1.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당시의 소속기관을 기재함
2. ③란은 해당란(□)에 √표시하고, 특정직공무원(교육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에 기재함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기재
3. ④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직(계)급·호봉을 기재함
4. ⑨란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재직기간을 기재하되, 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5. ⑩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표시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 형 확정일, 형량을 기재함
6.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기관의 인사담당관·연금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이 직접 기재하고 서명 날인함.
7.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예정일로부터 정년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기재하되, 월 단위이하 잔여기간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조 기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급 :

(상당계급)

3.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 퇴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 하

명예(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 요건심사서

인적사항	소속 : 직위 :	해당(이상)유무
	직급 :	
	성명 : 생년월일 :	
명예퇴직 제외요건 해당여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인지 여부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인지 여부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인지 여부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인지 여부	
	감사원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등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인 자인지 여부	
	정부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인지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 공무원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공무원교육훈련법 등에 의하여 교육훈련 이수 후 의무복 무 중에 있는 자 인지 여부(장기 위탁교육훈련 진행 중 인 자 포함)	
	명예퇴직원 자필작성 여부	
	그밖에 상기 내용에 준하는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인지 여부	
조사작성 및 확인자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2012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인천광역시서구 인사담당 직급 성명 (인) </div>		

퇴직공무원 보안교육 및 서약집행

1. 대 상 자

전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2. 퇴직사유 :

3. 보안교육 실시

- 일 시 : 2012. .
- 장 소 :
- 교 관 :
- 교육내용 :

4. 보안서약서 징구 : 별첨

퇴 직 자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12. . 일부로 퇴직함에 있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이 근무 중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은 국가안전 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여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지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인 행위임을 자인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2012. .

○ 서 약 자 : (인)

○ 서약집행관 소속·직위 :

직급 :

성명 : (인)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 - 1503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2. 30.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하수이용부담금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통보되어 지하수이용부담금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준 마련

2. 주요내용

-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조항 신설
- 부과액 조정 신청 : 기간 연장(30일→60일)
- 과오납금의 환급 조항 신설
-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2.01.19(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우편번호 404-701,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심곡동 244번지) 서구청 건설과 Fax 032-560-2764】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 성명 (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 기타 참고사항
- 조례(안)에 대한 내용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건설과 치수관리팀 (☎) 032-560-4535로 문의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제4호 중 “재무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 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지하수이용부담금의 감면) ① 구청장은 공익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 감면율 100%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 감면율 100%
3. 그 밖에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감면금액이 연간 1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감면자, 감면금액, 감면사유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5조의3(과오납금의 환급) ① 구청장은 납부의무자가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지체없이 그 과오납금액을 지하수이용부담금환급금액으로 결정하고 납부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환급 시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6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①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구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부과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세납부대행기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제18조제1항 중 “30일”을 “60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실·과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과별 의견			
협의개요	실·과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 간 . . . ~ . . . ○ 내 용 - 의견수렴	-	-	-
입 법 예 고			
협의개요	제 출 자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 간 . . . ~ . . . ○ 내 용 - 구보게재 - 인터넷	-	-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 - 1507호

경서3 구역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공람공고

1. 인천광역시 서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서 3구역 도시개발사업 토지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인가를 위함과 같은법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82,4785)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 공고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되오니 미 수령된 경우는 본 공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011. 12. 29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환지계획 공람 개요】

- 가. 사 업 명 : 경서3 구역 도시개발사업
-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124- 66번지 일원
- 다. 면 적 : 368,085㎡
- 라. 공고기간 : 2012.01.02. ~ 2012.01.16.